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의 편익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고속국도 휴게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법」에 근거한 기존 관리체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안 제4조)

나. 휴게소를 운영하는 4가지 방식을 규정(안 제5조)

다. 시설운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정하고, 민자 방식의 경우에는 민자
적격성 검토 및 타당성 평가 등의 절차를 규정(안 제6조)

라. 휴게소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과 관련 안전 기준을 규정(안 제7조)

마. 운영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등을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이메일(jh9973@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전화 044-201-3920, 팩스 044-201-559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